

취업제한제도 안내문

안녕하십니까?

홍길동 님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퇴직일('16. 00. 00)부터 5년간 공공기관,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

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(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의 관련성 여부 등)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※ 문의: 퇴직 전 소속기관(☎ 000-000-0000)

※ 붙임 :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(서식)

취업제한제도 안내문

안녕하십니까?

홍길동 님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퇴직일('16. 00. 00)부터 5년간 공공기관,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(기관)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, 법무법인, 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

※ 취업제한기관 : 법 제82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참조

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(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(기관)와의 관련성 여부 등)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(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※ 문의: 퇴직 전 소속기관(☎ 000-000-0000)

※ 붙임 :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(서식)

[붙임]

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

1. 요청인 인적사항

소속기관		주 소	
직 위			
직 급		연락처	직장 Tel.
성 명			자택 Tel.
생년월일		취업제한사유 발생일	

2. 면직사유

--

3.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

취업예정 기관명	사업장 주소	예정 직위 및 담당업무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 청 인

인

(퇴직당시 소속기관·단체장) 귀 하